

대한비과학회 간행위원회 규정

(2005. 2. 1. 초안)
(2006. 10. 13. 보안)
(2011. 3. 13. 제정)
(2014. 3. 9.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비과학회 간행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회지와 회원 학술논문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회지 게재신청 논문의 적부심사
2. 게재논문의 선정 및 학회지 편집
3. 비과학회 우수논문상 심사 및 선정
4. (삭제) <2014.3.9>

제4조(구성) ① 본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간행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② 간행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최소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행이사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의 주관은 간행이사가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